



# 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December 2021



# Contents

## GAAP

04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 (금융감독원)

## GAAS

10 전환사채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2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KAM)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 TAX

15 최신 세무뉴스

16 최신 세무예규판례

## K-SOX

19 K-SOX update

20 연차결산에 대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및 유의사항

## Hot Topic

23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 01

GAAP  
회계



##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에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중 2021년 연차재무제표 작성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아래 온실가스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내용입니다.

\* 금융감독원 사이트 참조: [2021년도 온라인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자료 게시](#)

### 1. 개요

- (기후변화협약) '15년 12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하여, '21년 1월부터 시행 중

\*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이내로 제한하되, 가능한 한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20년 10월)하고 온실가스 배출하용량 축소 등을 이행 중

\*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text{CO}_2$  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만들

- (배출권 거래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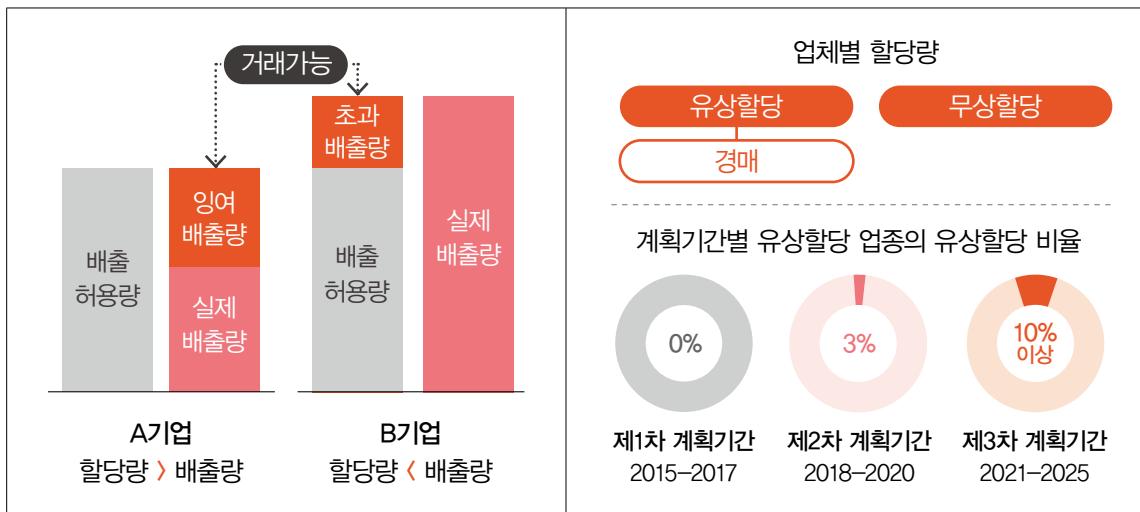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등(배출권거래법)

\*\* '21년부터 총할당량의 10%를 경매절차를 통해 유상할당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 배출권 거래제 개요



- (회계기준)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나, IFRS에는 배출권 거래 관련 기준이 없어, 상장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처리 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 중

\*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중·소형 비상장기업이 주로 적용

\*\* K-GAA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14년 제정하여 '15년부터 시행

#### K-GAAP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주요 내용

##### 가. 배출권

- ① **인식:** 배출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출권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 인식(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인식)
- ② **분류:** 보유 목적에 따라 무형자산(의무이행목적) 또는 유동자산(단기매매목적)으로 분류
- ③ **측정:** 보유 목적에 따라 원가(의무이행목적) 또는 공정가치(단기매매목적)로 측정

##### 나. 배출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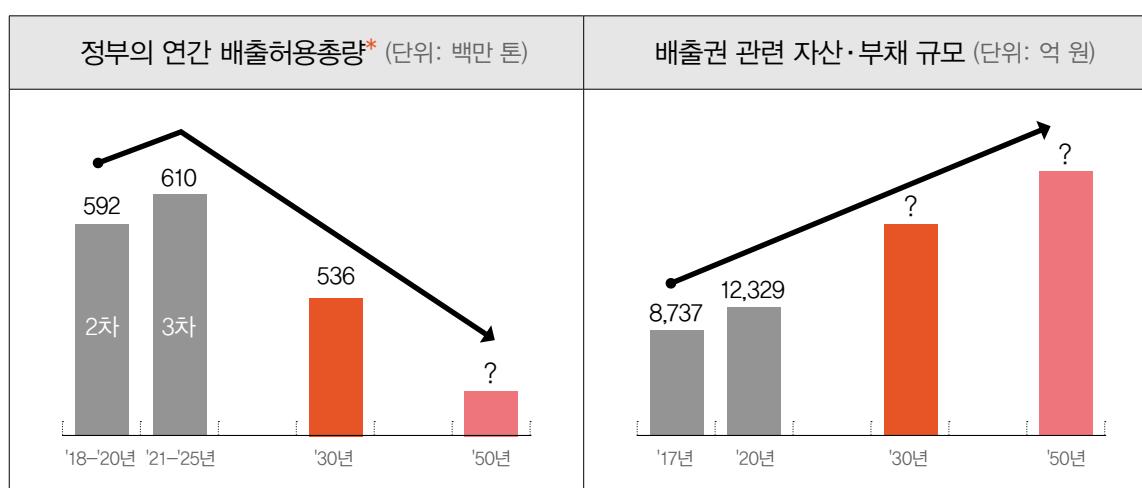
- ① **인식:**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배출부채 인식

## 2. 배출권 관련 재무제표 공시 현황

- (배출권 관련 재무제표 공시 현황) '20년 말 현재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할당분(장부가액 0)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음

\*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19년 할당량 기준)의 연결재무제표(주석 포함)를 분석한 결과

- 유상할당분이 증가('20년 3% → '21년 10%)하는 '21년부터는 배출권 자산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연간 배출허용총량과 관련 자산·부채 규모 추이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년~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18. 7. 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원료('20. 12. 24.)'

## 3. 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

- K-GAAP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표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

<p>* K-GAAP 제33장 문단 33.15 및 33.16</p> <p>가. 배출권</p> <p>①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의 수량 ②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③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p> <p>나. 배출부채</p> <p>①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② 보고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p>
--

- (기대 효과) 재무제표 이용자는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IFRS를 적용하는 상장법인도 배출권 관련 공시기준으로 준용 가능

❶ (회계정책)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인식, 측정, 제거와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등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

**[작성 예시]**

1. 중요한 회계정책

(1) 온실가스 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유상으로 매입한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매입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 배출권을 보유하는 주된 목적이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경우 추가기재사항**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❷ (무상할당 배출권)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을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 별로 구분하여 공시

\* 계획기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년~5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간

\*\* 이행연도: 계획기간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1년 단위 기간

**[작성 예시]**

(1) 온실가스 배출권

1) 의무이행 목적으로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①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톤(tCO<sub>2</sub>-eq))

구분	2021년도분	2022년도분	2023년도분	2024년도분	2025년도분	합계
무상할당 배출권						

### ③ (배출량 추정치) 배출부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고기간의 배출량 추정치를 공시

####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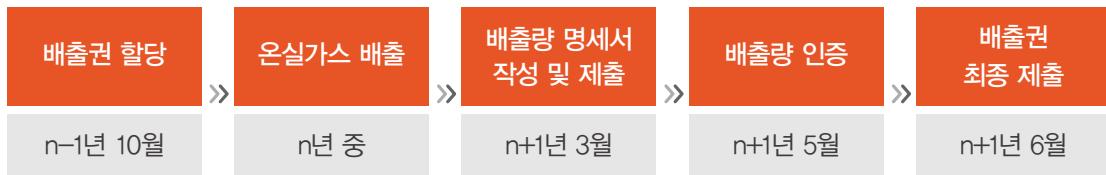
##### (2) 배출부채

① 당기 이행연도에 대한 연결실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xx 톤(tCO<sub>2</sub>-eq)입니다.

### ④ (배출권 증감내역) 기업의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배출권 증감내역을 공시

\* 매년 기업은 실제 배출량을 인증 받은 후 인증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며, 배출권 여유·부족분에 대해 이월·차입 승인을 받거나 매매도 할 수 있는데, 당기 사용배출권의 경우 차기 6월에 제출하고, 이월·차입 신청 및 승인과정도 차기에는 진행됨

#### •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



### ⑤ (배출부채 증감내역)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의 변동내역을 공시

#### [작성 예시]

##### (2) 배출부채

① 당기 및 전기 중 배출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2021년)	전기 (2020년)
기초		
전입		
환입		
기말		

### ⑥ (단기매매 배출권) 정부 제출의무 이행이 아닌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은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

### ⑦ (담보)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 수량과 장부금액을 공시

# 02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 전환사채 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 1. 개요

- 전환사채(CB)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2.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가액 조정시 유의 사항

- 상장회사는 CB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발행 당시 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함.

#### ① 발행 단계

- 최대주주 등이 CB 콜옵션 행사 또는 자기 CB 매수를 통해 발행 당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CB를 발행 (이사회의사록 및 인수계약서 등에 반영)
- 이를 위해 발행 당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분율을 확인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
- CB 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되거나 제3자가 CB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

#### ② 콜옵션 행사·자기 CB 매도 단계: CB 콜옵션 행사자 또는 자기 CB 매수자 중 CB 발행 당시의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경우

- 해당 CB가 전부 전환될 경우, 발행될 주식 중 최대주주 등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이 CB 발행당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상장회사는 「제3자가 CB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자기 CB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신설, 거래소 공시의무는 없음).
- 계약서 등 「제3자의 CB 콜옵션 행사」 또는 「자기 CB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며, CB 콜옵션 행사자 또는 자기 CB 매수자 중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 경우 행사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

- 상장회사가 시가하락 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는 CB를 사모발행할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액도 상향 조정되도록 해야 함
  - (적용대상) 주주배정(상법513의2①), 일반공모(법 §165의7①3호) 등 공모발행 방식의 경우에는 상향조정 의무 면제
  - (전환가액 조정시기) 전환가액 하향조정일과 상향조정일은 동일
  - (조정범위) 상향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발공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상이어야 함

\* 신주 할인발행, 감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상향조정한 경우 이를 감안

\*\* 아래 ①, ② 중 높은 가액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증발공규정 개정 내용은 상장회사에 한하여(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2021년 12월 1일 이후 이사회에서 최초로 발행이 결의된 전환사채부터 적용
-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기재누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대주주등이 규정상 한도를 초과하여 CB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거나, 상향조정 리픽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정명령,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부과

###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지속하며 상장회사의 CB 발행 및 최대주주등의 CB 콜옵션 행사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KAM)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 1. 개요

- ▣ 핵심감사사항(KAM)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사항 중에서 선택됨
- ▣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 적용대상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감사보고서의 KAM 적용 대상은 2,212개사(12월 결산법인 대상)로, 전년(2019년: 1,312개사) 대비 크게 증가(900개사, 68.6%)

### 2. 핵심감사사항(KAM) 개수 분석

-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1사당 KAM 개수는 1.46개로, 1천억 원 미만(0.97개), 1천억 원 ~ 5천억 원(1.10개), 5천억 원~2조 원(1.22개)의 KAM 개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KAM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존재
- ▣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평균 KAM 개수는 1.21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많은(18.6%)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업종별로는 건설업(1.13개), 도·소매업(1.13개), 제조업(1.10개)의 평균 KAM 개수가 업종 평균(1.09개)을 상회

### 3. 핵심감사사항(KAM) 기재항목 분석

- ▣ KAM 기재 항목은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순으로 동 항목들은 대체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임
- ▣ **자산규모별**  
공통적으로 기자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항목이, 2조 원 미만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음. 공정가치 평가 항목이 높은 것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중 금융업이 많은 것에 기인함

\*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를 손실로 반영  
(예: 영업권 손상인식, 유형자산 손상인식, 투자주식 손상인식 등)

□ 업종별

**제조·서비스·건설업**

수익인식, 손상 순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으며,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수주산업)상 수익인식 기재 비중(88.3%)이 월등히 높았음

**도·소매업**

손상, 수익인식 순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기재 비중도 높았음

**금융업**

금융자산·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손상, 공정가치 순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으며, 기타항목(18.3%)으로 보험의 기재비중(7.8%)도 다소 높게 나타남

#### 4. 시사점

- KAM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사항이므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에 해당할 가능성 있으므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뿐만아니라 KAM 기재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있음

# 03

## TAX



\* 출처: Korean Tax Update\_Samil Commentary, 2021.12

## 최신 세무뉴스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12월 2일 동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킴. 정부가 2021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당초 세법 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수정 내용
국세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현행) 20억 … (개정) 30억</li> </ul>
소득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현행) 2022. 1. 1. … (개정) 2023. 1. 1.</li> <li>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2024. 12. 31.)</li> <li>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9억 … (개정) 12억</li> </ul>
상속세 및 증여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현행) 매출액 3천억 미만 … (개정) 매출액 4천억 미만</li> <li>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li> <li>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li> </ul>
부가가치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현행)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li> </ul>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3천만 원 … (개정) 5천만 원</li> <li>시가 이하 발행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과세이연 특례 적용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 근로소득 과세)</li> <li>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1년 … (개정) 2년</li> <li>'2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li> </ul> </li> <li>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현행) 2021. 12. 31. … (개정) 2023. 12. 31.</li> <li>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현행) 국내비용 세액공제 적용 … (개정) 국내·국외비용 세액공제 적용</li> </ul>

## 최신 세무예규판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동종 업종의 공장을 추가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한법 제58조의 3은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이하 “쟁점 감면 규정”이라 함),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이하 “쟁점 감면배제 규정”이라 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설립 후 공장용 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2021년 자동차 부품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임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쟁점 감면 규정 및 쟁점 감면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조세심판원은 쟁점 감면배제 규정이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 바, 신설된 중소기업이 그의 명의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에 대해 창업 당시로 소급하여 해당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함 (조심2021지2393, 2021. 10. 19.)

이번 심판례는 창업중소기업이 설립 당시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로서 종전 심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심2020지0069, 2020. 8. 20. 등), 한편,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사업장을 두고 동종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존재하는 바 이번 심판례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사료됨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 5. 22.)

## 과세사업을 위한 유상증자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일정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이번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함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 2021. 6. 23.)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관련성에 따라 유상증자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로서, 조세심판원에서 자금 조달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에 대한 사업관련성은 해당 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이 과세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상증자와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심2016중3427, 2017. 2. 14.)

# 04

## K-SOX 내부회계관리제도



## K-SOX

### K-SOX update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장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개정 내용을 확정(2021년 10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의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 등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슈 내용을 기준 '모범규준 등 FAQ'에 추가한 것입니다.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9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러싼 그라운드 룰을 세팅하고 전반적인 공감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실제로 작동하는 유효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감사인들이 회계법인간 일관된 감사방법론하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운영과 평가와 관련된 고려사항, 그리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K-SOX

### 연차결산에 대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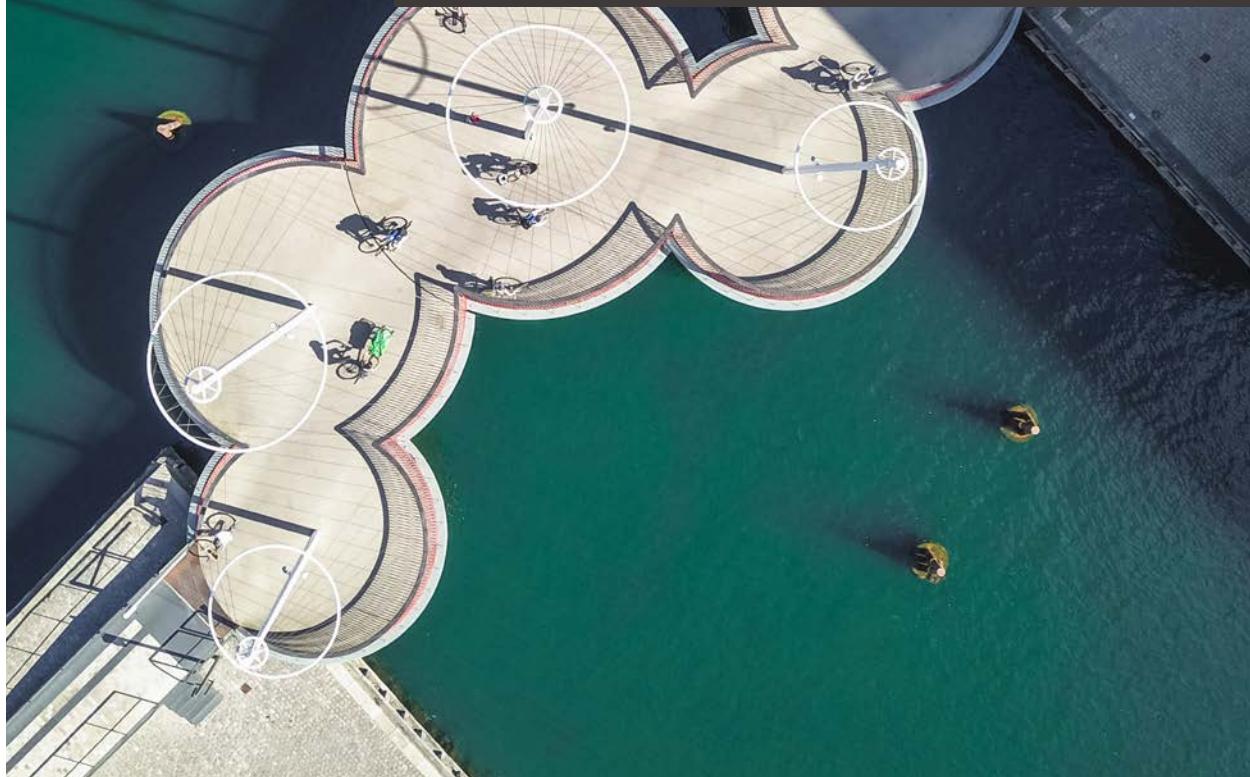
어느덧 2021년이 며칠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기구 그리고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을 위하여 지난 수 개월간 변화관리를 포함한 설계평가, 운영평가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제 연차결산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체크포인트를 고려하여, 남은 기간 동안 연차결산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분	항목	고려사항
	제·개정 회계기준 적용 및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당기에 신규로 적용되는 제·개정 회계기준 및 차기에 적용될 예정인 회계기준 영향분석</li></ul>
통제의 운영	변화관리 및 미비점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b>변화관리:</b> 중간평가 이후 조직,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변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변화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li><li><b>미비점 시정조치:</b> 전기에 발견된 미비점이 개선되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와 당기에 신규로 발견된 미비점의 시정조치 계획과 이 행정과, 그리고, 해당 미비점이 개선되어 충분한 기간동안 설계 및 운영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한 평가</li></ul>
	:	<p>*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3</p> <p>특히, 전산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기술 일반통제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세스에 내재된 자동통제, 수동통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전산시스템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며, 기존 통제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함</p>

구분	항목	고려사항
통제의 운영	비경상거래의 파악 및 회계처리 검토	<p>비경상거래는 회계처리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임. 따라서, 연차결산 이전에 당기에 발생한 비경상거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위험평가의 중요한 과정임</p> <p>비경상거래 파악을 위한 활동과 고려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의위원회 등 회사내의 주요 위원회에 재무책임자가 배석하여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비경상거래의 유무를 파악하고 회계처리 영향을 검토</li> <li>• 각종 의사록, 주요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경상거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조건을 파악</li> <li>• 파악된 비경상거래의 인식, 측정, 공시측면에 있어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등</li> </ul>
	결산준비 및 이슈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전기 및 중간기간에 발견된 주요 수정사항의 발생원인과 시정여부에 대한 점검</li> <li>• 외부감사인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경영진 의사결정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충실히 문서화</li> <li>• 핵심감사항목, 감독기관의 중점감독사항에 대한 회계 처리 최종 점검</li> </ul>
	일관성 있는 가정의 적용	연도말에는 차기 이후 사업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임. 따라서, 주요 회계추정치 산정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가정과 최근 수립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가정과의 일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의사소통	결산 및 경영진평가 일정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재무제표 제출 및 결산이사회 일정 점검:</b> 사전재무제표 제출 이후 적절한 내부통제에 따라 식별되지 않은 재무제표의 수정은 내부통제 미비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결산일정을 점검하여 적절한 결산 체크리스트를 정립/운영하고, 수정사항이 적절한 내부통제에 따라 식별/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업무정책과 절차를 점검</li> <li>• <b>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일정 점검:</b>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경영진 운영실태평가 일정 점검</li> </ul>

## *Hot Topic*



## Hot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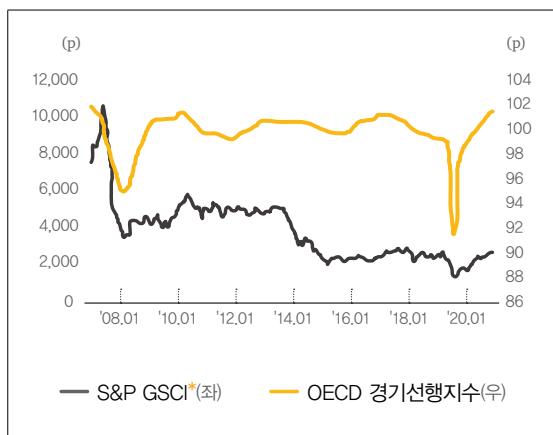
### 원자재 가격 동향 및 전망

#### 1. 원자재 시장 동향: Up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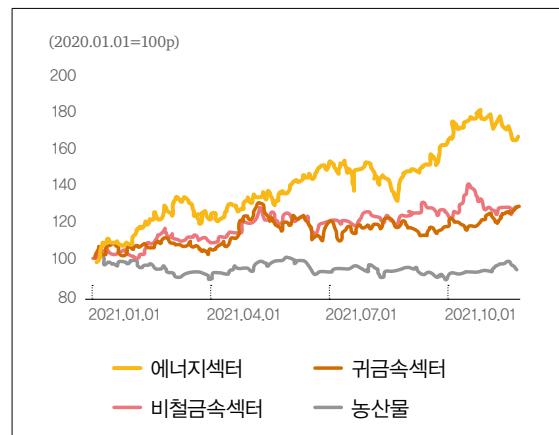
- 원자재는 글로벌 경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원자재 가격이 큰 폭 하락하였으나, 2021년 경기회복과 함께 귀금속을 제외한 대부분 원자재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특이 함.(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동시 선호)

구분	현황 (2021년 1월~11월 말)
에너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21년 1분기)으로 인한 석탄 생산 감소, 3분기 북반구 난방유 비축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4분기 유로존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 등으로 에너지는 원자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산업금속	전기차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수요를 공급이 맞추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있음
농산물	'20년 하반기 발생한 라니냐 여파로 '21년 상반기까지 곡물 가격 상승세 보임
귀금속	금리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귀금속지수는 약세

- 원자재와 글로벌 경기의 상관관계



- 2021년 원자재 가격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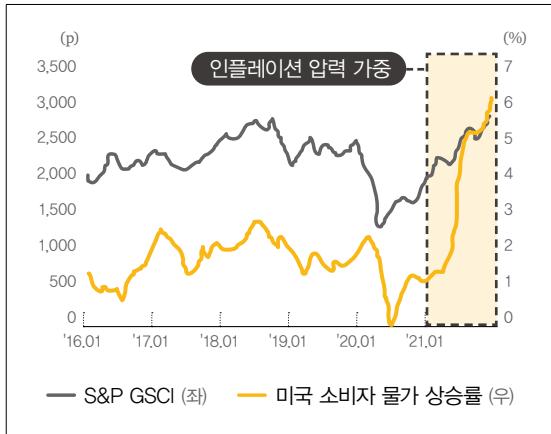


(Source: Bloomberg)

\* S&P GSCI: Standard & Poor's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각국은 물가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임.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시점 고민중임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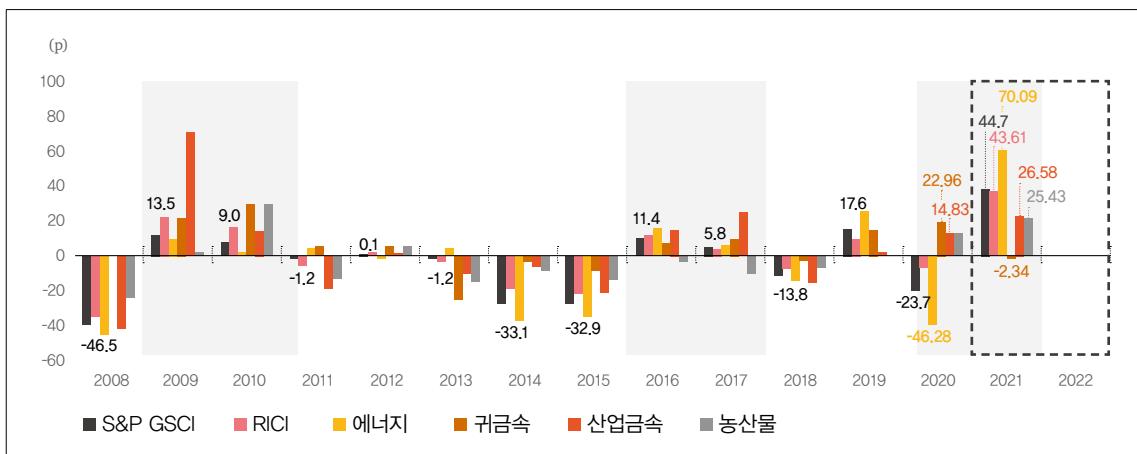


- 금리 동향: 기준금리 vs. 시장금리



(Source: Bloomberg)

- 2008년 이후 연간 원자재 가격 추이(장기시계열)



(Source: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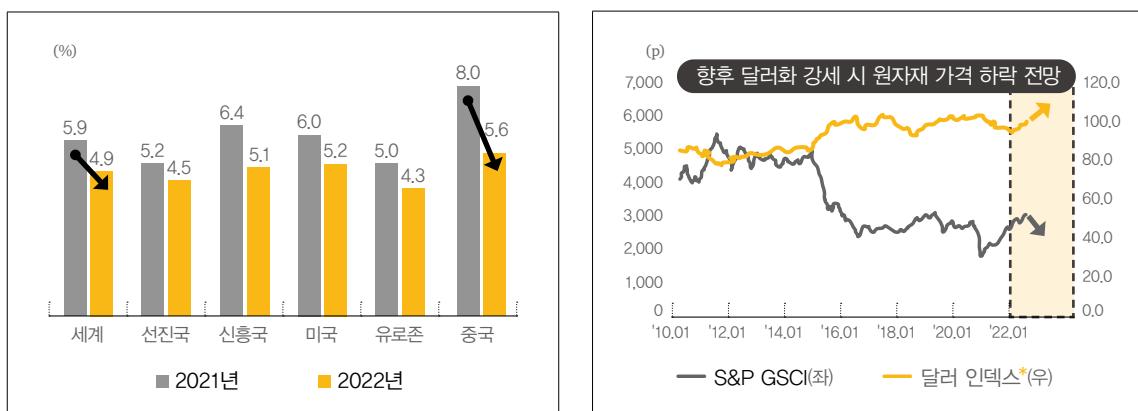
\* S&P GSCI = Standard & Poor's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RICI =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 S&P GSCI 등 원자재 지수는 '20년 5월부터 상승 전환한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회복세와 맞물려 +40%대 상승률을 보임

## 2. 2022년 원자재 시장 전망: 상반기내 Climax 형성 기대

### [2022년 경제 전망]

- IMF 10월 세계경제 전망, 2022년 경기 회복 속도는 2021년 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 (上高下低)
  - 현 경제 상황: 수요는 우호적. 향후 경기회복 저해 요인으로 공급망 차질과 고물가를 지적
  - 물가는 2022년 중반 이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바이러스 확산세 지속은 부담 요인
-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중요도가 높아짐.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에서는 달러화 또한 강해질 전망이며, 달러화 강세는 원자재 등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IMF World Economy Outlook ('21년 10월)
  - 원자재 가격 vs. 달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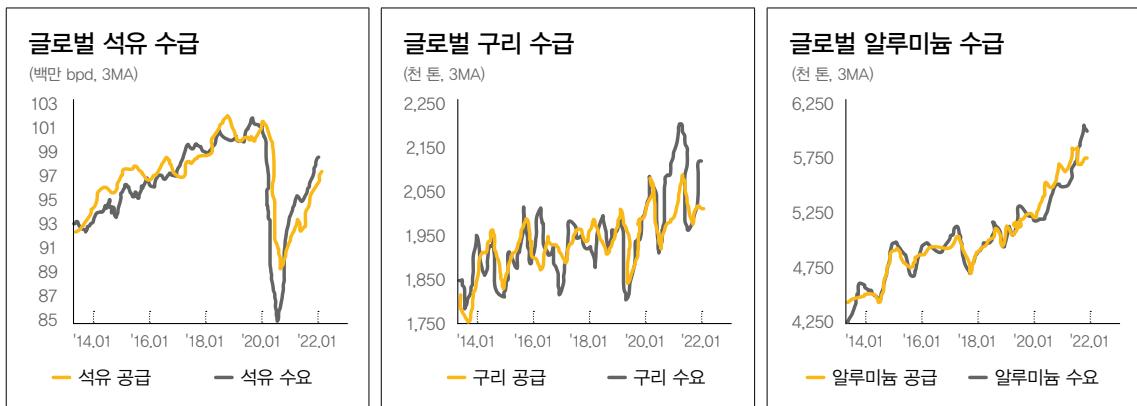
\* 달러 인덱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FRB 발표)

### [원자재 시장 전망]

- 수요 안정화와 공급 확대로, '22년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 전망임
  - 수요: 경기와 주요국 통화정책 고려 시, '21년과 같은 급격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공급: 코로나19 우려로 축소·지연되었던 자원 프로젝트 등이 재개되며 공급 개선 전망

↳ '22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지연으로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확대되며 가격 안정화 전망

- 주요 원자재 수급 현황



(Source: Bloomberg)

- 원자재 품목별 전망: 비철금속 > 에너지 > 농산물 > 귀금속

구분	향후 전망
에너지	'21년 큰 폭으로 상승한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석탄)는 '22년 1분기까지는 전력난 우려로 강세가 예상되나, 2분기부터는 수급 정상화로 인해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비철금속	구리, 알루미늄과 2차전지 광물(니켈, 리튬, 코발트)에 대한 수요는 친환경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전망
농산물	'21년 하반기 이후 상승탄력 둔화세(커피, 원면 등 소프트만 강세) 다만 '21년 4분기 '라니냐(LaNina)' 재발 우려 및 '21년 하반기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비료가격 급등으로 '22년 상반기 일부 농산물(겨울 밀)가격 상승 가능성 있음(미국 옥수수와 대두(콩)는 11월을 끝으로 수확 완료되어 영향 제한적일 전망) '22년은 달러강세 기조로 농산물 가격은 하방 압력 우위로 전망됨
귀금속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귀금속은, 통화정책 정상화 및 달러화 강세 국면에서 투자매력 축소되며 가격 약세 예상

-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단기) 에너지 대란, (중장기) 화석연료 의존도 하락 vs. 신재생에너지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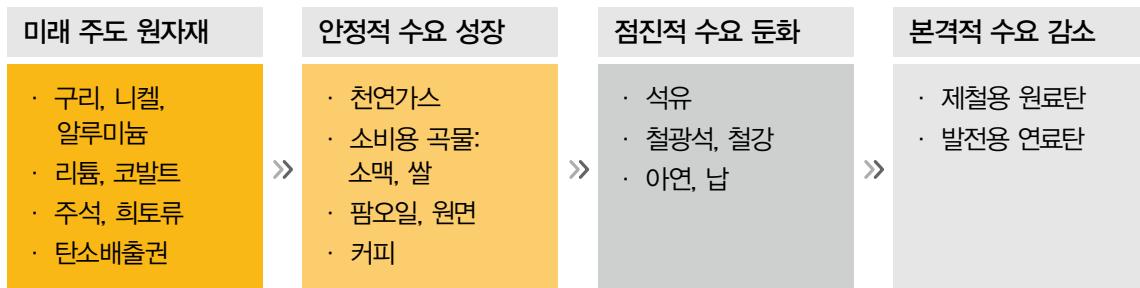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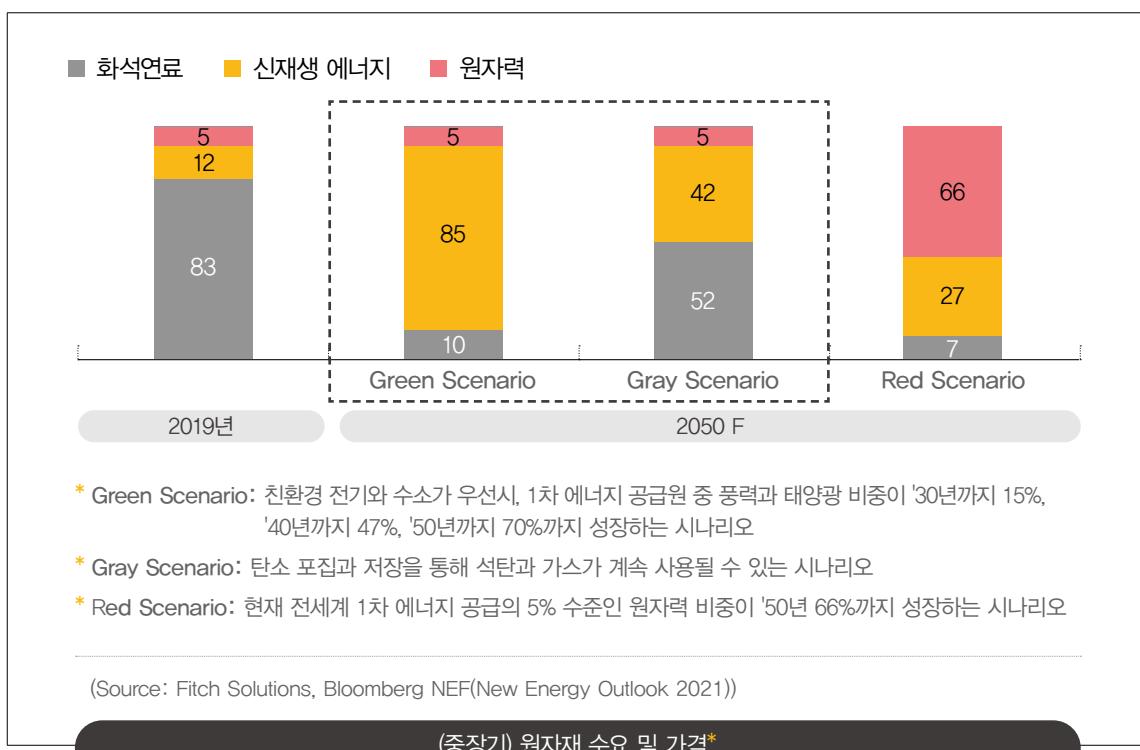
### 3. 중장기 원자재 시장 전망: Paradigm Shift

- 향후 원자재 가격은 2021년 말~2022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 예상되며, 특히 중장기 패러다임 대전환이 진행 중인 에너지 부문은 원자재별 명암차(신재생에너지 vs. 화석연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11월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예산 법안(Infrastructure Bill)' 하에 향후 전기차,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는 비철금속(그린 에너지 메탈\*)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가격 상승 추세 지속될 전망임

\* 대표적 그린 에너지 메탈(Green Energy Metals): 구리,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리튬

- 에너지 대전환: 중장기적 화석연료 수요 감소 vs. 전기화 관련 비철금속 수요 증가 (단위: %)



\* 원자재 가격 상승폭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순서



## Contacts

###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 TAX

최 혜 원, Partner

+82 2 709 0990

hyewon.choi@pwc.com

### K-SOX

정 구 진, Partner

+82 2 3781 9757

goojin.jeong@pwc.com

### SRC

이 은 영,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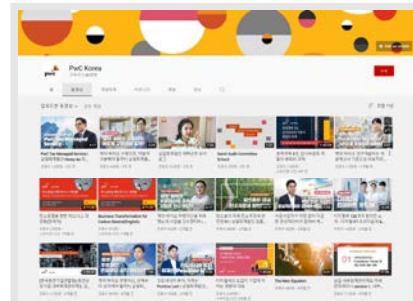
+82 2 709 0824

eunyoung.lee@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Click](#)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www.samil.com](http://www.samil.com)

S/N: 2112A-NL-008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